

#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정 정 균\*, 박 철\*\*, 박 상 재\*\*\*

## 요 약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Military Justice System Reform :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Jung Kyun Jung\*, Cheol Park\*\*, Sang Jae Park\*\*\*

## ABSTRACT

The The ROK military announced a reform proposal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in 2018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military judicial reform.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nd independent military judicial system through such reforms, the Supreme Military Court was abolished to eradicate the controversy in the army and to abolish the system of the judges' And professionalism is systematically ensured so that judges can be judged only by law and conscience. This military reform proposal is so dramatic that it has a vocal voice of opposition, but the military should no longer be an exception to democracy and should try not to get caught in the stigma of human rights blindness.

**Keywords: Military Justice System, Defense Reform 2.0, Military Justice Reform, Military Human Rights, Human Rights Protection**

접수일(2018년 5월 29일), 수정일(1차 : 2018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2018년 6월 29일)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외래교수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수료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교수  
\*\*\*육군교육사령부 교리연구원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수료

## 1. 서 론

과거 우리 군(軍)은 ‘윤일병 사망사건’이나 군 고위직의 각종 비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판결 등 군 사법제도의 폐쇄성에 관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1]. 특히 군 고위직의 사건들의 경우 이들의 지위가 군 행정뿐만 아니라 군 사법에 대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군 장병이 ‘체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개혁 2.0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그 정신과 기초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공론화를 거쳐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어놓음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을 논의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의 임기종료와 함께 군 사법개혁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준전시상태임에 따라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 때문에 결국 정권이 바뀌고 없던 일이 되었으며 2014년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 사법개혁이 시도되었으나 독소조항인 관찰관 확인조치권(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가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반쪽짜리 개선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국방개혁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의 국방패러다임 변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군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 중 군 사법개혁안을 통해 우리 군 장병의 인권보호 및 군 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 사법개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방개혁 2.0의 도입배경과 목표

### 2.1 국방개혁 2.0의 도입배경

우리 국방부는 빠르게 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현재의 군 구조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2018년을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통해 본격적으로 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2]. 또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이 규모가 크고, 힘든 작업이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엄중해진 국내외의 상황에 따라 국방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최근에는 ‘핵무력 완성’과 더불어 ‘핵탄두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자국 안보 이익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육군은 2014년 38만 명이었던 병력자원이 지난해에 35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26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병력자원의 부족이 현실화됨에 따라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군이 당면한 중요한 해결과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이러한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야말로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국방개혁 2.0’

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정신과 기초를 계승하는 데에서 그 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국방개혁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교훈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3]. 국방부는 분명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개혁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며 전쟁 발발 시 속전속결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How to Fight)을 우선적으로 정립함에 따라 군 구조를 조정하고, 지휘권 관계를 설정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유사시 ‘최단시간 최소 희생’으로 모든 상황을 승리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작전수행 방법을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국방개혁 2.0에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할 단·중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의 개혁 의지와 함께 정부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여 개혁안 수립 초기부터 군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

## 2.2. 국방개혁 2.0의 목표 및 기본원칙

### 2.2.1 국방개혁 2.0의 목표

우리 군은 미래지향적 군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 건설을 국방개혁의 비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목표를 추진하였다. 첫째,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제시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가 가능하도록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력을 확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국방개혁을 바탕으로 즉응대세와 위기관리·교육훈련 및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 등을 통하여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는 군’으로 우리 군의 핵심전력과 3군의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 전쟁수행 능력을 구비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획득체계를 확립하며 우리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선진 병영문화를 수립하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 2.2.2 국방개혁 2.0의 기본원칙

국방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중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증 및 조정 하면서 국내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방개혁 2.0은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新작전수행개념을 구현을 위한 군 구조 개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 혁신을 통하여 기관별 역할의 재정립 및 비리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복무여건 및 사법제도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진하고, 수립하기 위하여 4대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4]

첫째, 이번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정신과 기초를 계승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원인과 교훈을 성찰하여, 군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5]. 둘째, 국방개혁 2.0은 적정한 국방예산 확보 및 획득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

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첨단 전자자산 획득에 국방예산을 우선 집행하고자 한다. 셋째,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 군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 개혁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군 전반에 명망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의 업무적 특성 및 효과를 판단하여 단·중기 과제 및 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한 여러 기반을 제도화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함에 따라 실효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하 국방개혁 2.0의 4대 기본원칙 중 관계 법령 정비와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주요 초점을 맞춰 군 사법제도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제도 개혁안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안은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에 따라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을 건설하고, 군 인권 및 군사법원개혁 등 군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 3.1 군사재판 시스템의 변화

군사법원 개혁 방향은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6].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와 육군 16개 부대, 해군 7개 부대, 공군 7개 부대에 설치된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군사재판 1심을, 국방부에서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이에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에는 우선 평시(平時)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지만 공소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경우, 우선 국방부가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상설화하고 일원화하여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군의 사건에 대한 통일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군사법원 조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부대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개 지역 군사법원장이 외부 민간법조인에서 충원됨으로써 군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5개 지역의 군사법원 설치로 재판관을 위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순회재판과 지역 군사법원 관할구역 내 영장전담 군판사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법원에서 사실 판단을 받게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두며, 이를 통해 장병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보장과 더불어 신뢰받는 군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중 군사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통하여 국방부는 군사재판도 공정성·신속성·정확성의 3대 요소가 확립되어 명실상부하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폐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완전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에서 군 지휘관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으로서 판결을 확인 및 승인하거나 감경할 권한인 '확인조치권'을 갖고 있었다[8]. 이는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관에게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지휘관의 자의적 감정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어 재판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표적 사건으로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 1 955판결 사안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관 살해미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징역 1년으로 감경되었다.

이외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56 56명 중 총 89명이 관할관 확인 조치로 형을 감경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형이 2분의 1 이상 감경된 인원은 35명이었다. 감경사유로 ‘성실한 군복무’(73명)가 82%로 1위를 차지했다. ‘가정환경 등 경제적 사정’(10명), ‘병사인 점’(4명)이 뒤를 이었으며, ‘미기재’(2명)도 있었다[9].

이러한 실태에 대응하여 2016년에 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감경권 대상의 범죄를 적극적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여 감경의 범위를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10].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군 지휘관의 평시 확인조치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이를 통한 감형 등 형량 조정을 사실상 봉쇄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반장교가 군 판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역시 폐지할 예정이다. ‘군 심판관 제도’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법리적 해석을 하는 법무장교가 아닌 현장을 잘 아는 일반장교가 맡아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나 일반장교가 지휘관의 의중에 따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사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심판관 제도는 군 특수성과 부대환경 및 임무 고려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심판관을 통한 재판 개입 가능성 때문에 국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실적으로도 심판관의 법률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합의과정이나 양형과정에서 형식적인 위치만

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무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11]

국회 입법조사처 현장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가 언급되고 있는 현황이다.

보통 현역장교인 재판장은 군판사의 의견을 들어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관이 상설기간이 아니라는 점은 곧 군사재판이 해당 보직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업무상 평가에 특별한 이익도 없고 법률 지식의 결여로 재판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아닌 단지 보조적 역할이라는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현역장교들은 심판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현장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12]

또한 형사 관련 법률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 군 형법상의 범죄의 대부분은 고도의 군사적 지식 없이도 일반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심판관 제도는 상관에 의한 폭행·상해·추행 사건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는 법이 정한 법정형을 무시하는 것이며, 양형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인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

### 3.3 군 판사의 신분보장 및 순환보직 폐지

이번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은 군 판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계급 정년을 탈피하여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지휘관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법무참모나 군 검사 등 다른 직역으로의 보직순환 역시 금지하기로 한 대신 군판사의 전문성은 5년마다 ‘군 판사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통해 제고하고, 재임용이 되지 않는 군 판사의 경우 군 법무관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개혁안 내용 안에 담고 있다. 더불어 군 판사와 검사의 보직순환도 완전히 분리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

고자 하였다[14].

그동안 군 판사와 군 검사의 보직순환은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제도 원칙의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은 2011년부터 군 판사 또는 군 검사직을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판사 및 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이번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의 내용을 통하여 보직순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군 판사와 검사의 보직순환을 완전 분리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4. 국방개혁 2.0을 통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효과성

### 4.1 민간법원의 이관에 대한 군 개혁안 평가

2014년에 실시된 군 사법개혁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서는 기존의 군 사법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재판 시스템으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군 범죄의 경우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6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sup>1)</sup>

이렇듯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군 온정주의’ 재

- 1)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14년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국민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군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76.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군 범죄는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63.6%였다. 또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 군의 폐쇄성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54.9%임에 반해, 군의 기강확립 필요성은 15.1%, 안보상황의 불변은 9.3%에 불과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2014년 11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 방식을 통해 유무선 5:5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7%p 이었다고 한다.

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국방부는 평시 2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개혁안의 경우, 1심은 두고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의 ‘자리 지키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에서는 1심이 사라지면 국방부가 군 검찰과 헌병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 지휘관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의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에는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개헌안 제110조 제1항에서는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서 발표하였다. 이어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는 규정 역시 내놓았다. 하지만 개헌 발표의 경우,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 개혁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와 청와대의 소통부족이라는 비판과 우리 군 사법개혁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군사법원의 폐지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매듭, 고리에 해당한다. 군사법원이 폐지되면 지휘관 사법의 제반 문제들, 즉 관할관의 확인 조치권이나 심판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이고, 군판사와 군검찰의 순환 보직으로 인한 사법의 독립성 훼손 문제 등이 일거에 해결된다.[15]

과거 ‘국방개혁 2020’의 실패의 답습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군사법원의 완전 폐지 그리고 민간법원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2 심판관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개혁안 효과

우리나라 군대의 심판관 제도는 군 경험이 풍부하고, 군 내부 실태 및 군사문제에 정통한 심판관을 참여시켜 군 판사의 법률적 판단과 군대의 특수성도 반영하고 있어 양자가 적절한 조화와 균

형을 이루어 장병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16].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법관이 아닌 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순정 군사범죄는 물론 비순정 군사범죄에 대한 어떤 전문적 법률지식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군 경험이 풍부하며 군사문제에 정통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운용하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17].

이번 국방개혁안은 심판관 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개혁안이 진일보한 개혁안이라는 평가와 여전한 독소조항이 남은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서로 맞서고 있다. 물론 국방개혁의 취지를 담은 이러한 개혁안에 대하여 각급 부대 지휘관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수사 및 재판 개입 가능성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휘관들이 폭행 및 사망사건이 터지면 엄정한 수사 및 처벌보다는 심판관 제도를 이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지휘관 감경권으로 형량을 임의로 감경시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더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심판관 제도 및 확인조치권의 완전한 폐지는 근본적인 군 사법제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4.3 군판사 5년 재임용 심사에 관한 신분보장 개혁안의 효과성

국방부 개혁안 중 군 판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연령 및 계급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범무참모나 군 검사 등 다른 직역으로 보직순환을 금지하는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마다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밟게 하여 군 판사의 신분 및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은 군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군 판사에 대한 5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있어 비판이 있다. 이는 군사법원 개혁이 군 수뇌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적 요소가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군 판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여 재임용 심사가 악용될 수 있어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데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후 군 판사의 판결에 있어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경우, 군 판사를 갈아치우는 식으로 운영될 우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군 인사위원회가 진급추천권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군 판사의 임명이나 보직·진급 등의 인사권은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군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 결국 인사권은 군 지휘부가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일반 법관의 경우 10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5년이라는 기간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며, 군 판사의 직무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국방개혁 중 군 판사에 관한 5년 임기 신분보장의 경우 군 판사의 인사제도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군사법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 5. 결 론

국방개혁 2.0은 군인들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 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그 목표와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군 사법운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장병의 인권보장을 통한 강력한 군 기강 확립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제도를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군 기강을 강하게 확립하는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국방개혁 중 군사법원의 개혁을 통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관 개혁을 통해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권개혁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사법개혁은 독립성과 전문성·공정성의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군사법원은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시 군 기강확립을 위해 존속되어야 하지만 장병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이미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의 특성과 군기 등을 고려해 심리된 내용을 감안하는 것으로 민간법원에 이관하도록 관할권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군단급에 설치된 31개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에 상설하고, 법원 수를 줄여 경험이 풍부한 군 판사가 재판을 맡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군 심판관 폐지 및 확인조치권 폐지를 통해 지휘관의 조직적 참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통로로 인식되었던 요소를 없애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판결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군 판사인 사위원회를 통해 인사관리를 독립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처럼 군 사법개혁은 「군사법원법」·「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해 나가고, 심판관제 폐지 및 확인조치권 폐지, 군 판사인사위원회 설치 등 법률개정 전이라도 개혁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장병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춰 개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개혁안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군 사법개혁의 내용이 불일치되는 요소가 있고, 군 수뇌부의 군사재판에 개입할 가능성을 남겨놓은 개혁이라는 비판도 있다. 결국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군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표방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군 사법’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621>, 2016.10. 5.
- [2] 국방부 국방개혁 2.0 공식사이트 <https://reform.mnd.go.kr/concept> 참조, 2018.4.17 방문.
- [3] 이데일리 목격칼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61206619079032](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61206619079032), 2018. 1. 18 자
- [4] 국방부, 2018 국방부 업무보고서, p.12, 2018
- [5] 해병대전략문제연구소, 국방개혁의 회고와 국방개혁 2020에 대한 교훈, 전략논단 제6호, p. 165, 2007.
- [6]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제1항.
- [7]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심판사항).
- [8] 「군사법원법」 제8조(관할관의 권한)
- [9]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8632790>.
- [10] 「군사법원법」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 [11] 박찬걸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p. 175, 2012
- [12] 한석현·이제일,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191, p. 56. 2013.
- [13]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49583>, 사법감시센터는평, 2018.4.17 방문.
- [14]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305>, 2018. 4. 17 방문.
- [15] 이계수·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p. 263, 2016
- [16] 이만중,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법과정치연구 제6권 제1호, p. 321.



- [17] 박성현,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24. 2013.

————— [ 저 자 소 개 ] —————



정 정 군

2016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석사)  
2016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 수료  
2016년~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외래교수  
email : jjkjjk0@naver.com



박 철

2015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석사)  
2018년 8월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 예정)  
2012년~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교수  
email : DreamatJAU@jangan.ac.kr



박 상 재

2001년 조선대학교  
국방정책학과(석사)  
2016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 수료  
2018년~ 육군교육사령부 교리연구원  
email : pj82613@nate.com